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 10. 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 10. 19.
-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8. 10. 2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홀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미혼모가 출산초기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미혼모, 모혼부, 미혼모·부 자녀의 정의(안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지원대상(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4) 지원사업(안 제6조, 지원중지(안 제7조)
- 5) 환수조치(안 제8조), 비밀유지(안 제9조)

※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검토보고 (이주현 전문위원)

####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유무 : 필요함

- 지역내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의 기준과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장치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향후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 나. 조례 제정의 적법여부 : 적법함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 등 한부모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근거:별첨1)
- 아울러, 미혼모 또는 미혼부나 그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전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한 결과, 서울시에 노원구와 도봉구가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한바 있었습니다.

#### 다. 조문구성 체계 적정여부내용 등의 적정여부 : 적정함

- 이 조례는 미혼모 양육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 등을 총 10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조문화하고 규정하여 법규로서 구성 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조문의 용어와 내용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여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근거:별첨2), 조문의 용어와 문장 등이 조례의 규정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 조문내용의 적정여부 : 적정함

- 이 조례는 미혼모 양육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 등을 총 10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조문화하고 규정하여 법규로서 구성 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조문의 용어와 내용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여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근거:별첨2), 조문의 용어와 문장 등이 조례의 규정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 실현 가능함

- 이건 조례안 제정전인 지금도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와 지침 등에 의거 이미 우리구에서 일부 사업을 집행중에 있었으며, 조문의 내용상 집행 실현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조례제정 전에 예산비용 추계에 대해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조례가 제정 시행하면 양육비 5천4십만원과 교육홍보비 1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하고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근거:별첨3)

#### 바. 비용추계의 타당성 유무 : 적정함

- 이건 조례안 제정전인 지금도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와 지침 등에 의거 이미 우리구에서 일부 사업을 집행중에 있었으며, 조문의 내용상 집행 실현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조례제정 전에 예산비용 추계에 대해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조례가 제정 시행하면 양육비 5천4십만원과 교육홍보비 1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하고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근거:별첨3)
- 아울러,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2019년 예산에 편성·반영하면 이건 조례안 제정후 실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 검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례 제정의 적법여부 및 지방 자치 사무여부, 조문구성 체계 및 내용 등의 적정여부,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출산 문제의 대두와 미혼 모부의 생활곤란 등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이진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8.9.13일부터 10.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조례 제정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실 있는 미혼 모·부 복지가 실현될 있도록 노력하고 시대여건의 변경과 사업변경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시의적절한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